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5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박주용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의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 및 처우개선 사업 규정(안 제8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

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지원 계획
2. 권익 향상 계획
3. 인식 개선 계획
4. 지도·점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이하 이 조에서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4. 1. 2. 일부 개정, 2024. 7. 3. 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